

# 북한 특허법

북한 특허법은 WIPO가 발간한 영문판 “INDUSTRIAL PROPERTY LAWS AND TREATIES”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번역을 거듭함에 따라 처음에는 사슴을 그런 것이 나중에는 말(馬)로 둔갑할 우려도 없다고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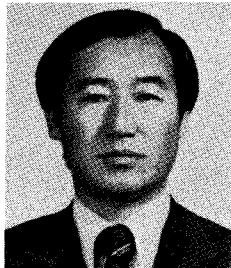
이에 북한 특허법의 한글판 원문을 근거로 그 특징적인 내용을 요약 분석하고 말미에 그 원문을 그대로 실는다.

북한 특허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 고안에 관한 규정”이라 이름짓고 있다.

위 규정은 “1986년 6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45호로 승인되고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5장 4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규정의 시행으로 1978년 12월 27일자 정무원 결정 제279호로 개정된 발명 및 창의 고안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 악마의 패러다임 주체사상



金 義 博  
<특허청 무기화학심사담당관>

북한 특허법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체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발명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사회는 그들의 소위 “사회적 유기체”의 머리 부분에 김일성을 앉혀놓고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이다.

위 글을 읽어보면 김일성의 교시는 정치사회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들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직무발명 보상성격의 특허법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여 공개한 자에게는 그 보상으로서 일정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북한의 특허법에서는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로서 특허권, 창의고안(권)의 3가지가 있으나 특허권은 내국인이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내국인에게는 사실상 허무(虛無)한 권리에 불과하고 발명권과 창의고안(권)은 일정기간(발명권 1년, 창의고안(권) 6개월) 그 실시로 얻어진 이익의 5~10%를 보상받는데 그치므로 북한의 특허법은 우리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다 하겠다.

따라서 북한은 정통적 의미의 특허법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겠고 그러한 특허법으로는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하겠다.

## 담당 부서

총괄적인 부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발명위원회”이나(제3조) 실질적으로는 발명권 및 특허권은 발명위원회에서(제15조), 창의고안(권)은 고안자가 소속한 기관, 기업소가 관장한다(제29조)

(주 : 필자가 1991년 4월 WIPO 주최 북경 세미나에서 만난 북한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 발명위원회의 명칭이 발명총국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 문서상 확인할 길이 없다)

북한 특허청은 모든 산업재산권을 집중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특허청보다 전문화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다.

## 발명과 창의 고안

발명이란 이미 알려진 과학기술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라고 정의하고 있는바(제4조) 우리의 특허와 유사한 개념이라 하겠고 창의고안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에 기초하여 일부를 보충 또는 개선함

으로써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주는 기술적 성과라고 정의하고 있는바(제5조) 법률적 보호를 완벽하게 받고 있는 우리의 실용신안과는 달리 기업의 “제안”에 흡사하다 할 것이다.

## 허여되는 권리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발명권, 특허권 및 창의고안(권)의 3종류이다(제7조). 발명권은 그 실시권을 국가가(제9조), 창의고안(권)은 그 실시권을(고안을 실시하는) 기관, 기업소가 가지며(제36조) 특허권은 그 실시권을 특허권자가 가진다(제10조).

특허권은 외국인만이 항유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내국인의 발명권 또는 창의고안(권)은 외국인이 누리는 특허권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 발명권 및 특허권 효력 발생시기

발명권 및 특허권의 효력은 발명위원회가 출원을 접수한 날부터 발생하는바(제25조) 출원을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우리의 경우보다 권리의 보호 시점이 빠르다.

그러나 내국인은 일정 수준의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효력 발생시기는 내국인에게는 무의미하다.

## 존속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15년동안 효력을 가지나(제11조) 발명권 및 창의고안(권)은 직무발명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존속기간이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발명 또는 창의고안을 하더라도 그 보상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 불복제도

북한의 특허법에는 심급을 달리하는 불복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한 법체계인데 북한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사법적 구제제도(불복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명자 또는 창의고안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겠다.

### 외국인 출원

외국인은 평양 특허 및 상표대리소를 통하여 발명위원회에 출원하여야 한다(제16조).

우리나라에서는 변리사제도를 두고 있어 자기이익대리에 적합한 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그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어 외국출원인은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심사과정

#### • 발명권 또는 특허권

출원은 발명위원회에 하고(제15조) 발명위원회는 출원을 발명등록신청공보(출원공보)에 발표하며(제18조), 2개월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받고(제19조),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며(제22조) 등록된 발명을 정기적으로 발명공보에 발표한다(제26조).

출원인은 거절예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있고(제23조), 제3자는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제27조).

특수부문의 발명에 대한 심사는 특수부문 발명심의 기관들에서 맡아 한다(제20조). 북한 특허법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출원공보를 발간하고 이의신청을 등록 전후로 받는 것이 특징이다.

#### • 창의고안(권)

출원은 고안자가 소속한 기관, 기업소 또는 그 고안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기업소에 하고(제29조) 기관, 기업소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등록하며 기술경제적 효과가 높은 창의고안은 해당 도(시) 과학기술행정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제31조).

창의고안(권)에 대하여는 거절예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제시, 제3자의 이의신청이 봉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심사도 사법적 절차인 심판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발명자나 제3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으나 북한 특별법에서는 이들의 보호가 영성하다.

### 북한 특허법에 대한 평가

북한은 붕괴되기 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전통적 의미의 특허법을 갖고 있지 못하여 발명에 대한 동기유발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체계도 합리적이지 못하며 용어의 선택도 한심하다.

북한이 개방을 하고자 한다면 불복제도의 도입 등 중국처럼 특허법 손질도 불가피하다 하겠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 〈발명위원회〉

#### 제 1편 우리나라 발명법규

1. 우리나라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정무원결정 제 45호(1986. 6. 28)로 승인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발명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 제 1장 일반 규정

제 1조 이 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

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발명을 장려하며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린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발명과 창의고안 성과들을 제때에 심의·등록·평가하고 도입일반화함으로써 기술혁명수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기관·기업소와 사회협동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기업소라 한다) 및 국민들에게 적용한다.

제3조 발명 및 창의고안사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위원회(이 아래부터는 발명위원회라 한다)가 통일적으로 맡아 한다.

제4조 이 규정에서 발명이란 이미 알려진 과학기술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를 말한다. 발명에는 본질적으로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기계설비와 장치, 제품, 기술공정 및 생산방법과 같은 과학기술적 제안들이 속한다.

제5조 이 규정에서 창의고안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범위에서 지금 있는 기계설비, 장치, 기술공정, 생산방법의 일부를 보충 또는 개선함으로써 보다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주는 기술적 성과를 말한다.

제6조 다음과 같은 대상들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발견과 사회과학 및 순수자연과학리론
2. 산업미술 및 공업도안
3. 시설물, 건설물 등의 설계
4. 계산도표, 표식, 부호, 시간표, 경기규정, 운행규정, 프로그램

5. 경제조직사업 및 기업관리방법
6. 사회도덕에 맞지 않는 제안

제7조 발명권과 특허권, 창의고안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8조 발명권은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내용 및 우선권을 인정하여 발명자에게 주는 권리이다.

제9조 발명자는 현행 법규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명권과 국가적, 사회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발명에 대한 리용권은 국가가 가진다.

제10조 특허권은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내용, 우선권 및 발명에 대한 리용권을 인정하여 특허증서 소유자에게 주는 권리이다.

제11조 특허권은 발명위원회가 발명등록신청문건(이 아래부터는 신청문건이라 한다)을 접수한 날부터 15년동안 효력을 가진다.

특허권의 유효기간에는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없이 그것을 리용할 수 없다.

제12조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해당한 수수료와 유효기간 연금을 물어야 한다.

제13조 다음과 같은 발명에는 특허권이 해당되지 않는다.

1. 화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
2. 의약품과 식료품
3. 원자핵 반응으로 생긴 물질과 원자력을 이용한 설비
4. 동식물의 새풀종과 육종방법

## 제2장 발명 및 창의고안의 심의등록

제14조 발명 및 창의고안 등록에 대한 신청은 발명자(또는 공동발명자), 창의고안자(또는 공동창의고안자), 그 권리를 넘겨받을 사람 또는 기관,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신청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제15조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요구하는 신청자는 발명등록신청문건(이 아래부터는 신청문건이라 한다)을 발명위원회에 내야 한다.

발명 제안의 우선권날자는 발명위원회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제16조 특허권이나 발명권을 요구하는 다른 나라 신청자는 신청문건을 평양특허 및 상표대리소를 거쳐 발명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17조 신청문건에는 발명등록신청서(이

아래부터는 신청서라 한다). 발명개요, 발명에 대한 기술설명서, 발명주장범위 및 그림 등이 있어야 한다.

제 18조 발명위원회는 신청문건을 받으면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신청문건 접수통지서를 보내며 발명등록신청공보에 발표 한다.

제 19조 기관, 기업소 공민들은 발명등록신청공보에 발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안에 발명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20조 특수부문의 발명에 대한 심의사업은 특수부문발명심의 기관들에서 맡아야 한다.

제 21조 발명권신청자는 발명품이나 견본품 또는 시편, 시료 등을 신청문건과 함께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 발명제안에 대한 심의결정은 발명위원회가 신청문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15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23조 신청자는 발명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3개월 안에 제기하여 해명받아야 한다.

제 24조 발명위원회는 심의결정된 발명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서는 국가발명등록부에 등록한다.

제 25조 심의결정한 발명권이나 특허권의 효력은 발명위원회가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 26조 발명위원회는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발명공보에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필요에 따라 일부 발명은 공보에 내지 않을 수 있다.

제 27조 기관, 기업소 공민들은 발명위원회가 발표한 공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3개월 안에 제기하여 해명받아야 한다.

제 28조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신청한 발명의 중요과학기술적 내용에 대하여서는 심의 결정되기 전에 공개할 수 없다.

제 29조 창의고안등록신청자는 창의고안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자기가 일하는 기관, 기업소나 그것을 받아들인 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제 30조 창의고안등록신청문건에는 창의고안등록신청서, 창의고안에 대한 설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

제 31조 창의고안등록신청문건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등록하되 기술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창의고안은 기술평정을 하여 해당 도(시)과학기술행정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 3장 발명 및 창의고안에 대한 평가

제 32조 해당 기관, 기업소는 발명을 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기술혁명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일군에 대하여서는 국가표창과 명예칭호 또는 국가수훈을 위한 추천문건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3조 기관, 기업소는 발명과 창의고안을 많이 하여 국가에 큰 리익을 준 일군에 대하여서는 한등급 이상의 기술자격급수 또는 인정기술자격을 주기 위한 추천문건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발명권 소유자에게는 그의 요구에 따라 해마다 10일간 새로운 발명을 위한 문헌조사 기간을 줄 수 있다.

제 34조 발명권소유자에게는 발명증서와 발명메달 및 발명상금을, 특허권소유자에게는 특허증서를, 창의고안자에게는 창의고안증서와 창의고안상금을 준다.

제 35조 발명권소유자에게는 해당 발명의 도입실적에 관계없이 발명건당 600원까지 발명특전상금으로 발명상금몫에서 먼저 준다.

제 356조 발명상금몫은 발명제안을 받아들여 정상화한 다음 첫 1년동안 얻어진 리익금의 5~10% 범위에서 발명위원회가 정하며 창의고안금몫은 그것을 받아들여 정상화한 다음 6개월 동안에 얻어진 리익금의 5~10% 범위에서 해당 기관, 기업소가 정한다.

제 37조 발명 및 창의고안사업을 적극 도

와준 협조자들에 대한 상금은 발명 및 창의고안 상금의 40% 범위에서 나누어주며 개인별 상금몫은 그들의 업적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인 기관, 기업소가 정한다.

제 38조 기관, 기업소는 발명 및 창의고안을 받아들여 3년동안 매해 실지 얻어진 리익금의 5%를 발명 및 창의고안 기금으로 세운다.

발명 및 창의고안 기금의 2%를 발명위원회와 해당 웃기관들에서 조절하여 쓸 수 있다.

제 39조 발명 및 창의고안 기금은 발명 및 창의고안을 장려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실습, 견학, 방식상학 등에 드는 비용과 발명특전상금, 발명 및 창의고안 현상모집, 기술혁신전시회, 기술혁신경기에서 주는 상금으로 쓸 수 있다.

#### 제 4장 발명 및 창의고안의 장려와 도입

제 40조 웃기관은 아래 기관, 기업소에 해마다 발명 및 창의고안 목표과제를 주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1조 기관, 기업소는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경제적 효과가 높은 발명과 창의고안 목표과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 42조 기관, 기업소들은 발명과 창의고안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전시회, 기술발표회, 경협교환회, 방식상학, 현상모집, 견학 등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제 43조 발명 및 창의고안을 한 일군이 일하는 기관, 기업소와 그 웃기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관, 기업소에서 기술적방조를 요구할 때에는 제때에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 44조 발명위원회는 등록된 발명문건들을 발명심의소와 인민대학습당에 비치하고 근로자들이 어느때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5조 발명위원회는 발명 및 창의고안 자료들을 해당 출판기관들에 주어 근로자들에게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5장 제재 및 기타

제 46조 발명과 창의고안사업에서 허위자료를 제기하였거나 발명권이나 특허권소유자의 권리침해 및 발명에 대한 비밀을 루설한 기관, 기업소, 공민은 엄중성 정도에 따라 해당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 47조 이 규정에 지정된 조항내용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이나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협정 조항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조약협정들의 규제조항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48조 발명위원회는 이 규정집행을 위한 시행세칙을 따로 만들어 실시한다.

제 49조 이 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1978년 12월 27일 정무원 결정 제279호로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의 효력을 없앤다. <♣>

안

## 제129회 발명 교실

내

일시 : 1994년 11월 12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발명장려관(KOEX별관 2층) <교재무료 제공>